

평창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유통산업발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8조제2항

-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.

○ 조례안 제10조

-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므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개정

○ 조례안 제14조제1항

-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호를 삭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로 일원화

○ 조례안 제14조2제4항(삭제)

-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

제3항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이 아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
이 항에 말하는 제출 서류는 실체가 없으므로 삭제

○ 조례안 제15조제1항

-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
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
수 있도록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회장”을 “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“유통산업분야”를 “군 안의 유통산업분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5급 이상”을 “과장급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등록”을 “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경우 군”을 “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회의 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협의회는 <u>회장</u>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다. (생 략)</p> <p>4. <u>군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</u>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<u>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</u> -----.</p> <p>③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군 안의 유통산업분야</u>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u>과장급</u> -----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<u>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</u></p>

제14조(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

2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

② ~ ④ (생략)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
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경제체육과장 한 왕 기
연 락 처	(033)330-2540

관계 법령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8조 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

① ~ ② 생략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[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제4조의2 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)

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④ 생략